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5542호)	전종덕의원	2024.11.14.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01.0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9009호)	임호선의의원	2025.3.17.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04.2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1366호)	문대림의원	2025.7.9.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08.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가.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5.12.16.)

에서 위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

에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식업의 허가에 따르는 인·허가 의제의 대상에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추가하고(안 제49조제2호의2),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안 제6조제2항제4호), 양식업자가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제49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자가용전기설비 설치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자의 소득·경영안정 및 수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양식업자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자가용전기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식업 허가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4. ~ 9. (생 략) ③ ~ ⑤ (생 략)	제6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u>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u> <u>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u> <u>응방안에 관한 사항</u> 5. ~ 10. (현행 제4호부터 제9 호까지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 가 등의 의제)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 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승 인·허가 등을 받거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2. (생 략) <u><신 설></u>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 가 등의 의제) ----- ----- ----- ----- ----- -----. 1.·2. (현행과 같음) 2의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u>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u> <u>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u> <u>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u> <u>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u>

3. · 4. (생 략) <u><신 설></u>	<u>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u> <u>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u> 3. · 4. (현행과 같음) <u>제61조의2(자가용 전기설비 설치</u> <u>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u> <u>단체는 양식업자의 소득 · 경영</u> <u>안정 및 수산업 분야의 온실가</u> <u>스 감축을 위하여 양식업자가</u> <u>「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u> <u>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따</u> <u>른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u> <u>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u> <u>자가용 전기설비(「전기사업</u> <u>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u> <u>용전기설비를 말한다)를 설치</u> <u>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u> <u>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u> <u>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u> <u>· 절차 · 방법 등에 필요한 사</u> <u>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u>
---	--